
Policy and Law Report _Vol.7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3.19 ~ 3.28) -

March 29, 2021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전략자문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및 입법예고 현황, 정부부처 및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정책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 3차 본회의 통과 주요 안건요지
2. 정부 주요 정책 동향
3.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4. 국회 주간 일정
5.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일정

1.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 3차 본회의 통과 주요 안건요지

*해당 안건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원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채권 5억원에서 각각 15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p>*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고용진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로 하고, 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수정, 김병욱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에 따라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결정된 경우에는 정비 지연 시에도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대안반영 법률안 : 5건 (유동수 · 김병욱 · 송재호 · 강민국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사와 수탁사의 사모펀드 운용 감시 · 견제 체계 구축 등 사모펀드 시장의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현행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개편하여 이원화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투자자 총수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되 일반투자자 수는 49인으로 유지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p>(수정, 조승래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p>(수정, 김성환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해야 하는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총전력생산량의 25% 이내’로 변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수정, 송갑석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업자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건	주요 내용
<p>•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p> <p>*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김정호 · 송갑석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의 정의를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하고 화상의 실시행위를 새롭게 규정하며, 한 벌의 물품 디자인에 대해서도 부분디자인을 인정함.
<p>•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p> <p>*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김정호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직 비공무원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직무발명의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국유 특허 전용실시계약의 갱신 횟수 제한을 완화함.
<p>•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p> <p>(원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관련 통계 작성·관리 근거를 신설함.
<p>•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p> <p>(수정, 고민정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요건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
<p>•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p> <p>*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송갑석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를 도입하고, 관계부처가 법령정비 착수시 사업자에게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의 의무가입 범위에 책임보험 외에 공제 등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p>•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p> <p>*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양금희 · 김정호 · 이성만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R&D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 근거를 마련함.
<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p> <p>(수정, 임종성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시설등 입지 선정 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 적용 범위를 현행 2킬로미터에서 300미터로 완화함.
<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p> <p>(수정, 안호영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함.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함.

안건	주요 내용
<p>※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4천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천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 4조1천억원 등으로 구성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 500만원 차등 지원 (7.3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115만 명에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 50% 감면 -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은 정부안(2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 -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 지원. •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1조1천억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최대 100만원 - 법인소속 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 -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 사업자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는 250만원(5개월) 등 • 이 밖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천억원 배정 •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

※ 2차 176건, 3차 9건(추경 및 부수법안) 총 185건 통과

2.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p>• <u>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u></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개정안은 국회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등 사모펀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임.</p> <p>* 유동수 의원안('20.7.24. 발의) · 김병욱 의원안('20.9.28. 발의) · 송재호 의원안('20.12.22. 발의) · 강민국 의원안('21.2.9. 발의)</p> <p>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 ②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③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 ④ 전문사모운용사 및 업무집행사원(GP) 관리·감독 강화, ⑤ 해외사례 등을 고려한 사모펀드 투자자수 규제 개선 등이 있음</p>	2021-03-24
	<p>• <u>「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u></p> <p>「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결정 시, 특례기간이 연장(최대 1년6개월)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p> <p>금융혁신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②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③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대 1년6개월간 '특례기간 연장' 등이 있음</p>	2021-03-24
산업통상자원부	<p>• <u>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용자보증을 제공하는 “녹색보증” 본격 추진</u></p> <p>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間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함. 동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 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됨.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용자보증을 제공하는 것임.</p> <p>이를 통해 ① 보증대상 확대, ② 자금조달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2021-03-25

부처	내용	일시
<p>식품의약품 안전처</p>	<p>•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영업자 부담 완화</p>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 함.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②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③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상향, ④ 영업자의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완화, ⑤ 정밀검사 실시주기 개선 등이 있음</p>	<p>2021-03-25</p>
<p>고용 노동부</p>	<p>•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p> <p>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함(3. 23~5. 2). 이번 개정안은 특고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됨.</p> <p>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질병·육아휴직 등 법령상 사유),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고위험·저소득 직종 보험료 50% 범위 내), ③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④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검사방법 개선 및 측정주기 단축) 등이 있음</p>	<p>2021-03-23</p>

3.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p>	2021-03-23
환경부	<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집단에너지업종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차 계획기간부터 무상할당 대상에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2021년)부터 3차 이행연도(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무상할당 대상업체로 정하고, 배출권 거래 외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대한 선택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제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도록 한 제한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1-03-23
금융 위원회	<p>•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고객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업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13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범위 및 절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절차 및 유효기간, 불법거래나 고액거래 등에 대한 적정한 보고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1-03-23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제안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p> <p>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급의무비용 회수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 공급의무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주체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 등이 있음</p>	2021-03-26
환경부	<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2021. 12. 30. 일부 시행))됨에 따라 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명확화 등(안 제38조), ② 결함있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세부기준 마련(안 제49조의2), ③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안 별표15) 등이 있음</p>	2021-03-26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p> <p>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1·2차 협력사 간의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결제조건 개선효과를 하위 거래단계까지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25조 및 제30조의2).</p>	2021-03-19
	<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p> <p>공시대상기업집단인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친족이 지분이 있으면 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 점, 외국 법령상 정보 제공이 제한된 경우나 회사 또는 친족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동일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점 등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국외 기업의 일반 주주의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이에 동일인이 직접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소유현황으로 명시하고자 함.또한, 사업자의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교환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상품 규격 통일화 또는 공동 마케팅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교환까지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시장에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임을 명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p>	2021-03-23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p> <p>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발생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이에 판매사와 수탁사로 하여금 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감시·견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외부감사 도입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여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 총수는 그대로 49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p>	2021-03-2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p> <p>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의 관리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이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었고, 특정사업자가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알고리즘 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과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 신설).</p>	2021-03-22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p> <p>게임물 관련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또는 게임물 이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여 게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게임물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36조제2항 신설 등).</p>	2021-03-19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p> <p>중소벤처기업부에 300개 이상의 창업기획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2021년 1월 등록된 308개 창업기획자 중 110개사는 지난해 투자 실적이 전무하고 보육 실적이 전혀 없는 창업기획자도 140개사에 이르는 등 등록된 창업기획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창업기획자 관리·감독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p>	2021-03-22
	<p>•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3인)」</p> <p>사업제안이나 교섭 진행 중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교섭단계를 거쳤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규율할 수가 없음.</p> <p>이에 위수탁 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p>	2021-03-25

4. 국회 주간 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	3/29(월) 14:00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현안보고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진상규명 추진경과 보고	
국회사무처	4/2(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32호 발간	
국회도서관	4/9(금) ~	「인공지능과 예술 : 딥러닝이 그린 패턴」 전시회 개최	국회도서관 2층
	4/20(화) 15:00	제14차「AI와 국회포럼」개최 - 주제 : 인공지능과 미래행정 - 발제자 :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온라인 개최
국회 예산정책처	4월 중	현안보고서 발간 -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우리나라의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4월 중	분야별 전문지 발간 • 「NABO 경제 산업동향&이슈」 4월호 발간 • 「NABO 재정동향&이슈」 2021년 제1호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	4/1(목) 14:00	「세미나」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특별 좌담회	온라인 세미나 (ZOOM)
국회 미래연구원	4/1(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 - 미래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정책대안	
	4/15(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6호 -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	
	4/22(목) 13:30	제1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 주제 :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 - 내용 : (발제) 이소영 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 (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국회 회의실

5.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29(월) 14:30	국회 ESG 포럼 창립기념식 및 토론회	김성주, 조해진 의원실 외	전국경제인 연합회
3/30(화) 14:00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	이개호, 신정훈, 윤재갑 의원실 외	유튜브 생중계
3/30(화) 14:00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김상희, 김민석, 김성주 의원실 외	유튜브 (최혜영TV)
3/30(화) 14:00	2021년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 과제 - 국민신회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남인순, 김성주, 정춘숙 의원실 외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3/31(수) 10:00	서울지하철3호선 연장 및 수도권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전문가 토론회	박진 의원실, (사)대중교통포럼	유튜브 (박진TV)
4/1(목) 10:00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전재수 의원실, 한국소비자연맹 외	온라인 세미나
4/1(목) 14:00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조응천 의원실, 미래경제연구회	온라인 (Zoo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전략자문팀)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